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회원 모집제한 해제〉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7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회원 모집제한 해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Ⅲ. 검토의견: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회원 모집제한 해제

□ 개정안은 ① 신용카드업자가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한편(안 제14조제1항제3호),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2. (생략)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u>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u>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생략)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신용카드업자가 아닌</u> <u>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u>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② ③ (생략)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u> ②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¹⁾는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모집인, ③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였음.

동 규정은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4년에 마련된 내용임.

□ 현재 전업 신용카드업자 모두²⁾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³⁾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업”이라 함)을 영위 중이며, 이를 통해 각종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마이데이터업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에서 수집·종합하여,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2)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업자의 본업이지만, 부수적⁴⁾으로 동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소비자 편익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음.⁵⁾

□ 그런데, 마이데이터업자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자 간 모집관련 업무제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⁶⁾에 따라 타사의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⁷⁾, 자사 신용카드 상품 중에서만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자사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음.

□ 반면,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금융회사나 핀테크사⁸⁾ 등은 다수 신용카드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여러 카드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이와 연계해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 2024.4., p.18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7)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타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8)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 이에 신용카드업자들은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9)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2년 9월) 받아 2024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데,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2년으로서 한시적인 것임.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¹⁰⁾>

◦ **혁신금융서비스 내용**

- ○○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추천에 관하여 제휴계약을 체결한 타사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대상

◦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카드는 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
- ○○카드는 마이데이터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송신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산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
- ○○카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 신용카드 상품과 신용카드회원모집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

◦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지정기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2-329호) 중 일부 발췌 및 재구성

□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회원 모집제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그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할 수 있게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¹¹⁾ 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¹²⁾

□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용카드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함으로써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사 등과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11) 자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해 타사 신용카드 상품을 불리하게 설명하는 등의 행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3. (개정안 신설) 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의 자산현황·소비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법문상 ① 마이데이터업자 뿐만 아니라 전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타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허용하고, ② 그 서비스 대상을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회원 모집 경쟁과열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 범위에 대하여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